

#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·납부의 달



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 
주민세 사업소분을 **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**  
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납부서와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 
기한 내에 납부서로 납부 하시고,  
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**현황과 다를 경우에는**  
인터넷 이택스(etax.seoul.go.kr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주민세 사업소분

- 납세의무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\*와 법인사업자  
\*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
- 과 세 표 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
- 세 액 기본세액[5~20만원]+연면적 세율[250원/㎡(330㎡초과시)]

## 신고 납부기간

8월 1일 ~ 8월 31일

## 신고 납부방법

-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(이택스, 위택스)
- ② 우편,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
※납세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발송되며,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(단,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)

## 주민세 문의

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국번없이  120번